

# KAU 로봇 연구센터 규정



## 한국항공대학교

## 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09.6.1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# KAU 로봇 연구센터 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** (명칭 및 소재지) 이 연구센터는 한국항공대학교 부설 KAU 로봇 연구센터(이하 본 센터라 함)라 칭하고,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라 함)내에 둔다.

**제2조** (목적) 본 연구센터는 항공우주 분야를 위시한 의료, 서비스 분야의 로봇 기술을 연구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** (사업) 본 연구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로봇 분야에 대한 자료의 수집, 조사, 연구
2. 동 분야의 기술개발
3. 동 분야의 연구자료집, 도서, 연구지 발간
4. 동 분야의 연구발표회
5. 동 분야의 산학협동연구, 위탁연구, 과제연구 등의 수행
6. 타 기관과의 협력, 공동연구 및 기술지도
7. 기타 본 연구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## 제 2 장 조 직

**제4조** (조직) 본 연구센터에는 연구지원실, 연구기획실, 홍보실을 둔다.

**제5조** (임원 및 임무) 본 연구센터에는 센터장 1인, 부센터장 1인 및 감사 1인을 둘 수 있다.

1. 센터장 및 부센터장은 본 대학교 공과대학에 재직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.
2. 센터장은 연구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업무를 통괄한다.
3. 감사는 회계 연도 말에 본 연구센터의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,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
**제6조** (연구실) 본 연구센터에 소정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별로 연구부를 둔다.

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두되 책임연구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. 연구부의 설치와 폐지 및 외부로부터 의뢰받은 연구과제에 대한 결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센터장이 시행한다.

1. 연구센터는 전문분야별로 연구부를 둘 수 있다.
2. 연구부장은 센터장이 임명한다.
3. 연구부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4. 운영위원회: 연구센터 운영관리의 주요사항 심의 결정하며 센터장, 간사, 연구부장 및 연구실장으로 구성한다.
5. 감사: 연구센터 회계활동을 감사한다.
6. 부장: 각 연구부의 활동을 주관한다.
7. 연구지원실: 연구센터 운영관리의 세부사안을 수행하며 지원실장은 운영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.
8. 연구기획실: 중장기 연구 사업의 기획을 수행하다.
9. 홍보실: 연구센터의 홍보와 대외 협력을 수행한다.

**제7조 (연구원)** 본 연구센터에는 책임연구원, 선임연구원, 연구원, 연구조원, 특별연구원을 두고 필요시 센터장이 위촉한다.

1. 책임연구원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.
2. 선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 경력자로 한다.
3. 연구원은 본 대학교에 재학하는 박사과정 학생 또는 동등 경력자로 한다.
4. 연구조원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석사과정 학생 또는 동등 경력자로 한다.
5. 특별 연구원은 본 연구센터의 목적에 찬동하는 교외인사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센터장이 위촉한다.

**제8조 (자문위원)**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**제9조 (운영위원회)**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**제10조 (위원회구성)**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실 센터장 및 연구부장 및 실장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연구지원 실장이 담당한다.

**제11조 (심의사항)**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
2. 연구과제의 선정
3. 연구계획, 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, 평가
4. 본 연구센터 규정의 제정 및 개정
5. 기타 본 연구센터 운영상의 중요 사항

**제12조 (회의)**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 제 3 장 제 정

**제13조 (재정)** 본 연구센터의 재정은 자체수입금, 대학에서 책정한 연구센터 예산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**제14조 (회계년도)** 본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
**제15조 (연구비지급 및 관리)** 연구비 운영 및 관리 규정은 대학의 규정에 준하며 기타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**제16조 (규정준용)** 이 규정에서 준용하지 않은 기차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### 제 4 장 기 타

**제17조** (시행세칙)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